

Comprehensive Plan for Recycling Waste Management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Writer

대한민국 정부 자료 제공

Contents

- I. 추진배경 및 경과
- II. 문제점 진단
- III. 추진방향 및 단계별 대책
 - 1. 제조·생산
 - 2. 유통·소비
 - 3. 분리·배출
 - 4. 수거·선별
 - 5. 재활용
 - 6. 홍보·교육
- IV. 향후 추진계획

I. 추진배경 및 경과

지난 4월 1일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한 이후 긴급대책을 발표하는(4.10, 국무회의)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4.16~).

특히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폐비닐·페트병 등)은 발생량이 급증한 반면, 유가성이 낮아 수거 중단 등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플라스틱 폐기물 위주의 감량·재활용 대책을 추진 중이다.

II. 문제점 진단

1. 제조·생산

화려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 등의 생산이 늘어 재활용이 어렵다. 국내 페트병 중 재활용이 가장 쉬운 1등급 페트병은 1.8%에 불과하다('15).

2. 유통·소비

1인 가구 및 온라인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 불필요한 과대포장 관행으로 1회용품, 포장 폐기물 등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1회용컵의 경우, 2009년 191억 개에서 2015년 257억 개로, 비닐봉투는 2009년 176억 개에서 2015년 211억 개로 늘어났다.

3. 분리·배출

분리배출은 일상화되었지만, 정확한 배출방법에 대한 교육·안내는 부족해 재활용 폐기물에 다량의 이물질이 혼입되고 있다. 실제로 분리배출되어 나온 재활용 폐기물 중 38.8%가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16).

4. 수거·선별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처리 책무는 지자체에 있음에도 민간 수거에 의존(약 70%), 처리업체·처리량 등 기본적 현황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민간 수거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고물

상으로, 시장 변동 등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다.

5. 재활용

재활용비용 상승, 유가변동 등으로 재활용업계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수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국내 재활용 제품 수요 또한 제한적이다.

Ⅲ. 추진방향 및 단계별 대책

목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 70%를 재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지자체·생산자·소비자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강화해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소비구조 확립,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 순환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1. 제조·생산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또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 제품 설계 :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모든 포장 용기류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유리병 등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EPR 분담금)을 차등 부과한다(‘19~). 특히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생수)은 사용 금지를 추진

(그림 1) 재활용이 어려운 사례와 개선 사례

재활용이 어려운 사례					개선 사례	
						
유색	유리 화장품	알루미늄 뚜껑	PVC 재질	종이라벨	무색, 분리가 용이한 합성수지 라벨	

한다(자원재활용법 개정, '18~).

페트병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색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평가 후 개선을 권고하고('18.10), 미이행 시 제품명을 공개한다('19).

(2) 생산자 책임 강화 : 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EPR 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18~)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을 현재 43개에서 2022년까지 총 63개로 확대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도 증액한다. 특히 페비닐에 대한 생산자 분담금을 우선 증액하고('18.6, 현재 전체 생산량 중 66.6%만 부담), 생산량 중 일부가 아닌 생산량 전체에 대한 비용부담 추진한다(자원재활용법 개정, '19).

2. 유통·소비

(1) 유통단계 포장 최소화

- 운송포장재 : 대형 온라인 마켓·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18.10) 및 법적 제한기준 마련(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19)

- 일반포장재 : 과대포장 제품은 대형마트 진열·판매를 금지하고(자발적협약, '18.4), 전자제품 등의 과대포장 제한기준 신설('18.9)

(2) 소비단계 사용 최소화

- 1회용컵 : 1회용컵 감량·회수·재활용 촉진 단계별 대책 추진

텀블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확대(자발적 협약(판매가 10% 수준 할인), '18.5), 테이크아웃 컵 회수 촉진을 위한 컵 보증금제 도입(자원재활용법 개정, '18~), 커피·음료 전문점의 재활용비용 부담 의무화(자원재활용법 개정, '18), 재질 단일화(자발적협약, '18.5)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제공
-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종이박스 사용 권장)
-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체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개선 : PET병 경량화 및 재질·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등을 추진한다.

- 비닐봉투 : 대형마트·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재래시장에는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 추진, 제과점은 종이봉투로 전환 촉진 등 주요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 추진

(3) 현장 이행 강화

- 제도 개선 : 제품 출시 이전 과대포장 검사 의무화(자원재활용법 개정, '18~), 1회용품 제한기준 위반 시 과태료 상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18.6~)

- 점검 강화 : 지자체·시민사회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과대포장 점검 및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을 연중 상시 실시

(4) 공공 부문 솔선수범

- 1회용품 사용 억제 : 전 부처·공공기관 대상 지침을 마

런('18.6)·시행하고, 사용저감 노력 및 성과를 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3. 분리·배출

분리배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TV 등 매체별 홍보,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18.5~)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안내 및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18.6~).

또한 국민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그림 등 시각적 콘텐츠 포함)을 마련·배포한다('18.6).

아울러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재활용동네마당) 등을 지속 확충해나갈 것이다.

4. 수거·선별

공동주택-민간수거 업체 간 계약 내용, 처리실적 등에 대한 지자체 보고 및 수거 중단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폐기물관리법 개정, '18.6~)한다. 또한 수거 중단 발생 시 즉시 보고, 단가조정 중재 및 임시 직접처리 등 지자체가 적극 대응토록 매뉴얼을 정비하도록('18.5~) 한다.

생활폐기물 처리 조치명령(환경부→지자체) 및 이행을 의무화 하고, 미 이행 시 행정·재정적 지원 중단 등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폐기물관리법 개정, '18.6~). 또한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공공선별장 확충하기로 했다(現 서울 14, 인천 1, 경기 30).

한편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수거 단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구조실태조사(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품질 자율등급제를 도입해 적정 가격 관리를 한다. 또한 환경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충족을 전제로 지자체 의견 수렴 후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나아가 생산자의 EPR 재활용 지

원금도 확대한다('18.6~).

5. 재활용

수출·입 동향, 유가 및 재활용품 가격 변동 등을 분석하고, 재활용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생산자가 납부하는 분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19~)해 가격 하락 등으로 폐기물 적체 우려가 있을 경우 구매·비축 등에 활용한다.

폐기물 수입 시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국내 재활용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를 강화('18.4~)해 수입물량을 조정하고, 제지·유리병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를 상향조정('18.하)하고 이행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제품(하수관거, 건설자재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및 조달 관련 지침·규격 보완, 조달가점 조정 등 우대 조치토록 하고('18.10), 고품질 선별기술, 폐비닐·페트 등 재활용제품 제조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18~), 품질 제고를 위한 중

[사진 1] 초등학교 자원순환 교육



[사진 2] 업사이클 센터



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18.하).

한편, 고품연료 사용시설의 주민감시체계를 도입, 환경기준 강화로 주민수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생활계 폐비닐로 만든 고품연료는 검사·조사를 통합·운영하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를 확대(환경안전성 검증 전제)한다.

6. 홍보·교육

1회용품 줄이기 등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해(~‘18.6.5, 환경의 날) 국민 참여 실천운동으로 확대해나간다(~‘18.9.6, 자원순환의 날). 또한 기획보도, 예능,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생활속 실천요령 등을 집중 홍보한다(‘18.4~).

시민단체·지자체가 참여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발대식, ‘18.6), 사회각계·각층의 의지 표명 및 국민참여를 요청하고,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플라스틱 없는 날(1회용품 없는 날)’로 선포한다.

또한 ‘플라스틱 줄이기 약속 릴레이’ SNS 이벤트, 대국민 참여 공모전, 경연대회 등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 주민 등 대상 맞춤형 환경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 및 자율학기제 환경교사 파견 등으로 현장중심 교육을 진행하고(‘18.7~), 주민에게는 주민·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 시민단체와 함께 분리배출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에코리더 등) 양성, 지역별 실천운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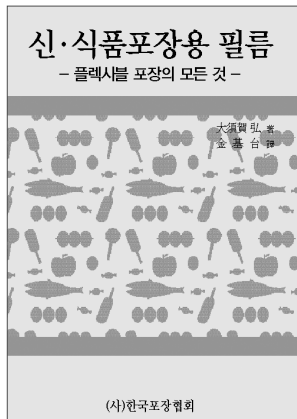
또한 권역별 업사이클 센터 등을 지역별 자원순환 문화·산업을 아우르는 허브(hub)로 육성, 전시·교육을 추진한다(‘18.5~).

V. 향후 추진계획

구분	전략	세부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제조 · 생산	제품 설계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및 분담금 차등화	○ 재활용법 개정('18.7~), 분담금 차등부과('19)	환경부
		순환이용성 평가	○ 평가계획 확정('18.4), 평가완료·개선권고('18.10) * 자발적 이행 독려를 위한 생산자 MOU 체결('18.4)	환경부, 산업부
		재활용 친화형 소재· 디자인 개발	○ 유니소재 지원대상 확정('18.6), 시제품 개발 지원('18.7~)	산업부
	생산자 책임 강화 (EPR)	품목 확대	○ 43개('18) → 57개('20) → 63개('22) *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18.하, 비닐류 5종 우선확대)	환경부
		재활용의무를 상향	○ 비닐류 의무율 상향('18.6) → 그 외 품목('18.하) * 생산량 전체에 비용부담 관련 재활용법 개정('19)	환경부
		면제대상 관리강화	○ 자료제출 의무화 등 재활용법 개정('18.7~)	환경부
유통 · 소비	포장 최소화	운송포장재(택배)	○ 과대포장방지 가이드라인('18.10), 법적 제한기준('19)	환경부
		일반포장재	○ 전자제품 등 과대포장 기준 신설('18.9)	환경부
	1회 용품 사용 최소화	1회용품 감량·회수· 재활용 대책	○ 다회용품 인센티브, 재질단일화 자발적 협약('18.5) ○ 컵보증금제 등 재활용법 개정('18.4~), 본격시행('19)	환경부
		비닐봉투 감량대책	○ 편의점·제과점 등 자발적 협약('18.6), ○ 대형마트 사용금지 등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8.6~)	환경부
		공공부문 사용 감축	○ 공공부문 사용억제 지침 마련('18.6) ○ 지자체·공공기관 평가 시 반영('19~)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이행 강화	제도 개선	○ 과대포장 사전검사 의무화 등 재활용법 개정('18.7~) ○ 1회용품 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상향 등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18.6~)	환경부
		점검 강화	○ 지자체·시민사회 합동점검반 구성·점검(연중 상시) ○ 과태료 부과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19~)	지자체, 행안부
분리 · 배출	홍보· 모니터링	올바른 분리배출 집중 홍보	○ 매체별 홍보,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18.5~) ○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18.5~)	환경부, 문체부, 지자체
	체계 개선	분리배출 기준 명확화	○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8.6) ○ 분리배출 개선 포럼('18.5~), 분리수거 지침개정('18.9)	환경부
		취약지역 인프라	○ 재활용동네마당 확대 및 전담 관리인 운영('18~)	환경부, 기재부
수거 · 선별	공공 관리 강화	공동주택 민간수거 보고 의무화	○ 지자체 보고 의무화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18.6~)	환경부, 지자체
		비상대응체계 마련	○ 수거중단 등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18.5) ○ 지자체 이행강제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18.6~)	환경부, 지자체
		공공선별장 확충	○ 공공선별장 신설, 노후시설 개선('18~)	환경부, 기재부
	수거 · 선별 업체 지원	수거업체 수익 안정화	○ 가격연동 표준계약서 보급('18.하) ○ 폐지 자율등급 가이드라인('18.6), MOU 체결('18.7)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18.하)	환경부, 기재부
		고물상 환경개선	○ 시설기준 마련, 입지기준 합리화방안 마련('18.하)	국토부, 환경부
		선별업체 지원 확대	○ EPR 생산자책임 강화로 지원금 확대('18.6~)	환경부

[표 8] 자원순환제도의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

구분	전략	세부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재 활 용	시장 안 정화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 관리센터 구축('19) ○ 안정화재원 마련('19~'22), 적체우려 시 구매·비축 * 시장연동형 EPR 도입방안, 시장안정화 조치 매뉴얼 마련('18.9)	환경부
		수입관리 강화	○ 수입폐기물 사전심사 강화('18.4~) ○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 강화('18.9)	환경부, 관세청
		국산 재생원료 사용 제고	○ 국산 재생원료 이용목표를 상향 고시 개정('18.하)	환경부, 산업부
	수요 확대	공공구매 확대	○ 공공사업·조달 시 우대 조치 마련('18.10)	환경부, 산업부, 조달청
		재활용제품 R&D	○ 고품질 선별기술 등 조기 상용화('18~'19) ○ 재활용제품 품질제고 중장기 R&D 로드맵 마련('18.하)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SRF 관리 개선	환경안전성 강화	○ 사용시설 기준강화 등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8.6~)	환경부
관리체계 개선		○ 검사·조사 통합 운영('18.5~) ○ 행정처분 합리화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8.6~) ○ 생활폐비닐 SRF 사용처 확대('18.6~)	환경부	
홍보 · 교육	실천 운동	대국민 집중홍보	○ 기획보도, 예능,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홍보('18.4~)	환경부, 문체부
		실천운동 확산	○ 실천협의체 구성('18.6), 국민참여 공모전 등('18.6~) * '환경의 날'(6.5)을 '플라스틱 없는 날'로 선포	환경부, 문체부
	자원 순환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 방과 후 수업 환경교사 파견('18.7~) ○ 주민·문화센터 교육, 분리배출 전문가 육성('18.6~)	환경부, 교육부, 행안부, 지자체
		체험기반 강화	○ 지역별 업사이클센터를 통한 전시·교육('18.5~)	환경부



서적 안내

신·식품포장용 필름

‘신·식품포장용 필름’-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 플라스틱의 성질, 필름제조법, 필름의 성질,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 식품보존성, 플렉시블 포장용 각종 필름, 포장과 환경문제,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20,000원
· 구입 문의

TEL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